APEC 엔지니어 소식

APEC ENGINEER REGISTER WORKSHOP and THIRD APEC ENGINEER CO-ORDINATING COMMITTEE MEETING 회의 참가 보고서

1. 회의 일시 및 장소

2001년 10월 18일~19일(20일), 말레이시아 수도 콸라룸푸르 씨티텔 호텔

2. 회의 의안

가. 워크숍

⑴ APEC엔지니어 등록 분야

⑵ 계속교육 요건을 정하기 위한 모델

⑶ 교직자에 대한 책임기술자 경력의 정의

⑷ 쌍무협정 기본 모델 및 추진 방안

나. 조정위원회

⑴ 제2차 회의에서 제기된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 협의

⑵ 심사등록사무소 변동 보고사항 : 심사등록위원회위원의 변동사항, 심사설명서 변경사항, 시행경과보고

⑶ 신규심사설명서 제출 및 수락 여부

⑷ 심사등록사무소를 이용한 쌍무협정 추진

⑸ APEC 엔지니어 워크숍결과 검토 및 메뉴얼 수정 · 보완

⑹ 제4차 조정위원회 개최 건

3. 참가국 및 대표단

호주, 캐나다, 홍콩,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타일랜드 등 11개국 57 명

단 장	심순보	한국 APEC 엔지니어MC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기술사회 국제협력위원장/충북대학교 교수
대 표	김종효	노동부 자격지원과장(서기관)
	백이호	한국 APEC 엔지니어 MC위원 / Civil 및 Structural 분야 심사등록사무소장
	전봉수	한국 APEC엔지니어 MC위원/ 한국 기술사회 APEC 위원장
	조정윤	한국 APEC엔지니어 MC위원 한국직업 능력 개발원 책임 연구원
	박하준	한국 APEC엔지니어 MC위원회 전문위원 건설교통부 사무관
	장병현	한국 APEC엔지니어 MC위원회 사무국 / 한국인력관리공단, 차장
	김상구	한국 APEC엔지니어 MC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기술사회 기획부장

※ 미국은 심사설명서만 제출 -> 캐나다 대표 대리 설명

4. APEC엔지니어 등록 워크숍

1) APEC엔지니어 등록 분야

- Biomedical, Biological, Food, Management, Information, Building Service, Aerospace Engineering, Industrial Management 분야가 문서 및 즉석 발표를 통하여 추가 등록분야로 추천되었음.
- Bio Engineering, Information Engineering, Building Service ineering, 및 Management Engineering의 4개 분야에 대하여 각각 투표를 실시한 결과 Bio Engineering과 Information Engineering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19일 조정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음

2) 계속교육 요건을 정하기 위한 모델

- 계속교육학점 기준으로서 매년 평균 50시간 최소 30시간, 3년간 150시간을 제안하였으며, 가중치등 학점계산은 각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음

3) 교직자에 대한 책임기술자 경력의 정의

- 책임기술자 경력 정의에 대하여는 각 모니터링 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냄

4) 쌍무협정 기본 모델 및 추진 방안

- 캐나다의 의견을 받아들여 더 좋은 모델 협정안을 만들기 위해 각국에서 이메일을 통한 의견제시를 촉구하였음

5. 제3차 APEC엔지니어 조정위원회

1) APEC 엔지니어 워크숍결과 검토 및 매뉴얼 수정 · 보완

- 분야확대는 Information Engineering과 Bio Engineering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등록시 Practice Area를 함께 기재하도록 함
- 계속교육은 'Formal 및 Informal'을 포함하여 년평

균 50시간을 유지하기로

- 교직자의 책임기술자 경력에 대하여는 각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되 APEC엔지니어 매뉴얼에 충실하기로 함
- 쌍무협정 모델안은 캐나다에서 재 작성하여 배부하기로 함

2) 새로이 심사설명서를 제출한 국가중

- 미국 : 원안대로 수락하며 심의 의결권 있음을 천명함.
- 인도네시아 : 심사설명서를 수락은 하되, 심의 의결권은 유보
- 필리핀 : 심사설명서를 수락은 하되, 심의 의결권은 유보
- 타일랜드 : 조건부 수락을 하며 더욱 보완토록 요청하였음. 심의 의결권 없음

3) 제4차 APEC 엔지니어 조정위원회 개최 계획

- 차기 제4차 조정위원회는 2003년 6월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함

  이때는 EMF 국제등록기술사제도회의 및 Washington Accord회의도 겸하도록 예정되어 있음

6. 회의 결과 종합

1) 회의결과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정리하여 APEC엔지니어 메뉴얼에 반영될 것이며, 이 결과는 캐나다기술사회 웹사이트에 발표될 것임
- 사무국에서 비용이 마련되는대로 하드카피도 일부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임

2) APEC엔지니어 등록분야가 기존의 9개 전문기술분야와 Information Engineering, Bio Engineering 분야를 추가하여 11개 분야로 확대키로 결정되었음

3) 쌍무협정의 기본 모델은 캐나다가 제안한 모델을 다시 보완하여 각 회원국에게 배포하기로 하였음

7. 제28차 FEISEAP 이사회

(1) 한국은 2003년말까지 부회장직 수락 의사가 없음을 공식 표명함

(2) 그러나 2004년부터 여건이 달라지면, 그때 사정에 따라서 부회장(회장)국의 역할 수행을 수락 할수도 있을 것임을 설명

(3)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FEISEAP 사무국에서 향후 KPEA측 수신인을 KPEA 회장이 아닌 KPEA국제협력 위원장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무국에서는 이를 수락 하였음

(4) 차기 이사회 일정은 2002. 3 인도네시아의 Bali로 잠정결정

(5) 한국 심순보 대표의 제안 사항 : FEISEAP의 명칭 변경을 공식 요청
- FEISEAP란 명칭은 APEC엔지니어 제도에 걸맞지 않다. 즉, 명칭중 'Southeast Asia'를 Asia로 변경하여 FEIAP(Federation of Engineering Institutions of Asia and the Pacific)으로 함으로써 중국, 인도 등의 참여도 유도하며, APEC엔지니어 제도에 걸맞도록 함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을 설명
- 이에 대하여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등 대부분이 찬동하여 차기 회장 및 사무국인 인도네시아 측에 향후 과제로 위임함

(6) KPEA의 2001년 회비($480)를 납부사실을 확인함

8. 향후 전망 및 과제와 건의

1) 한국 APEC엔지니어 심사등록위원회 규정의 조속한 보완 · 개정이 요망됨

2) 기술분야 확대에 따른 신규 심사등록 사무소 및 CPD 교육기관지정이 요망됨

3) APEC 엔지니어 활용을 지원하는 관련 국내법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함

4)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회원국간의 상호면제 및 쌍무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함

5) 회원국 상호 감사에 대비하여 심사등록관련 제반 서류의 영문 번역 작업이 필요함

6) 심사등록위원회 및 심사등록사무소의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확보와 국가 예산 지원 체제 마련이 시급함

7) 한국 APEC엔지니어 제도 정착을 위한 각종 홍보사업 수행 및 국 · 영문 홈페이지 개설 · 운영이 필요함

8) 분야확대에 따른 심사등록위원회 규정 보완 및 추가 분야 등록사무소와 계속 교육기관지정 필요. KSEA

제2회 APEC 위원회 회의

■**일시** : 2001. 9. 20.(목) 14:00

■**장소** : 한국기술사회 회의의실

■**참석** : APEC위원(전봉수 위원장, 이리형 · 유병억 · 김원종 · 백이호 · 심순보 · 김진원 위원)

■**보고안건**

1) 제3차 APEC엔지니어 Coordinating Committee 회의 및 심사등록사무소 워크숍

2) 분야확대에 따른 심사설명서(Assessment Statement)검토

- 교과과정 내용
- G8, G9 및 G10의 채택 의견

3) APEC엔지니어 개별심사 사례의 신규작성의 건

4) 7개분야 심사등록사무소 및 CPD운영의 건

5) APEC엔지니어 등록대상자에 관한 사항

6) 기타사항

APEC엔지니어 등록업무 수행(건설 · 구조분야 제외)

■ **분야확대에 따른 심사등록설명서 (Asscessment Statement)제출**

- 건설 · 구조분야를 제외한 7개분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지질분야 · 광업분야 · 환경분야 · 화학분야 · 산업분야(정보 및 소프트웨어분야 · 빌딩서비스분야 독립추진)
- 한국산업인력공단(APEC엔지니어 심사등록위원회: MC위원회)제출 (2001. 9. 25)
- MC위원회 개최 확정(2001. 10. 9 예정)

■**APEC엔지니어 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 건설 · 구조분야 이외의 7개분야 확대시행 승인
- 일 시 : 2001. 10. 17.(수)~21(일) (4박5일)
- 장 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한국기술사회 참석
  · 황삼모 회장(기술사회에서 수행하게 될 7개분야 승인획득 지휘 및 각국의 실제 교류 가능시점 파악)
  · 전봉수 APEC위원장(7개분야 확대에 따른 심사등록설명서 설명)
  · 김상구 부장(각국의 등록사무소 운영실태 파악)

■**APEC엔지니어 기술부문 분류 적정성 검토**

- 우리나라 97개 기술사 종목을 APEC엔지니어 9개 분야로 분류(한국산업인력공단 분류안 참조)
- 각 분회별(자격종목)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조정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첨부 분회 및 부문회 명의로 요청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기술사법개정 추진

■ 주요내용

- 현재 개인기술사사무소만 허용하던 것을 합동기술사사무소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 기술사의 국제간 상호인증추세에 따른 외국기술사의 국내활동과 국내기술사의 외국활동 촉진을 위한 근거규정(안 제5조의2)
- 기술사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기술사회의 기능에 규정(안 제16조)
-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복수로 설립 가능토록 규정(안 제14조)

■ 쟁점사항

- 합동기술사사무소는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엔지니어링진흥법에 규정하고 등록(신고)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해야 한다고 주장(한국엔지니어링협회)

· 현행 기술사법에 의거 개인기술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합동기술사사무소도 기술사법에 규정함이 법체계상 타당함(현재까지 과학기술부에서도 기술사회 의견대로 법정개정안을 추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심의를 거쳐 법제처장 결제를 완료하고 차관회의에 상정예정)

· 현행법에서도 기술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기술자만 확보되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할 수 있음. 따라서, 회나 협회차원 보다는 기술사들이 자유롭게 선택(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의견이기도 함)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고,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기를 원하면 기술사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합동기술사사무소는 정부안대로 기술사법에 규정되도록 관철하여야 함.

건설기술인협회 업무현황

■회원수(2001. 8. 31. 현재)

- 428,040명

토목 139,718(32.6%), 건축 139,212명(32.5%),
기계 44,805명(10.5%)

※ 기술사 13,473명(3.1%), 기사 119,003명(27.8%), 산업기사 66,475명(15.5%), 학·경력자 169,033명(39.5%), 기능계자격자 43,919명(10.3%)

■건설관련 사병경력[공병병과, 시설병과]도 인정하도록 개정됨

- 2001. 8. 13. 시행(건기법시행규칙 개정:8. 13)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 해당분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